

Q4

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?

A

「산림보호법」 제34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,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은 화기, 인화물질, 발화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라이터, 담배, 휴대용 버너 등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. 적발시 「산림보호법」 시행령에 의해 10만 원(1차 위반)에서 20만 원(2차 이상 위반)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Q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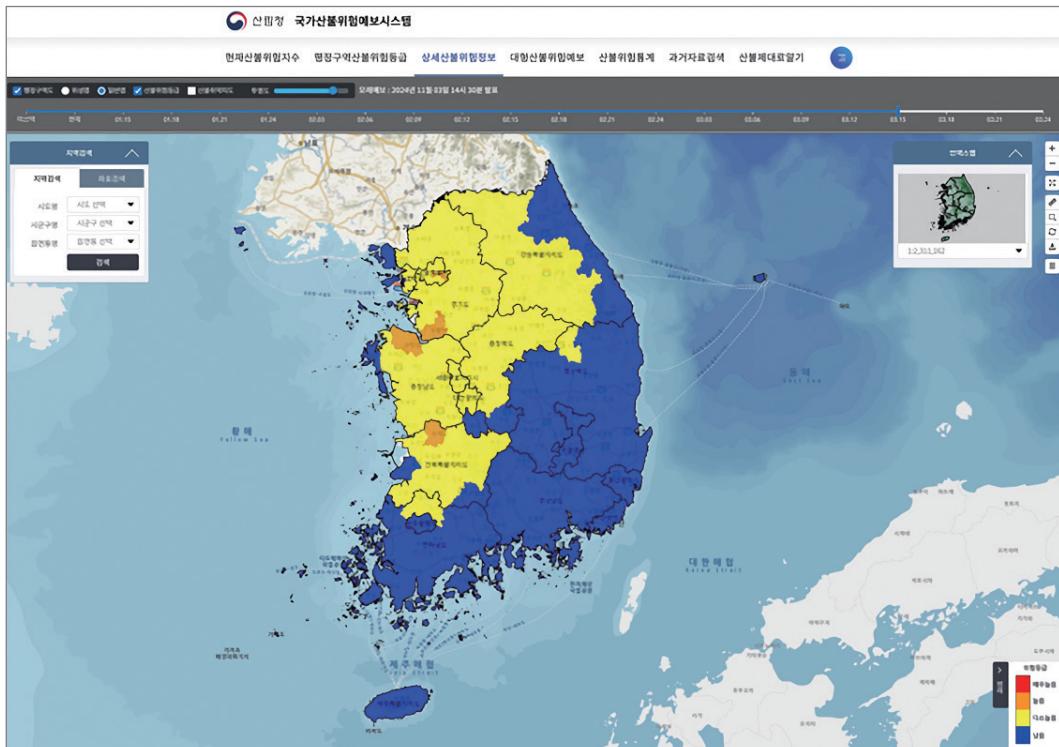
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?

A

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호법 제31조(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산림재난예측분석센터에서는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습도와 바람, 기온 등 기상 실황 및 예보자료와 함께 지형, 임상도 등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산불위험지수를 분석하고 산불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합니다. 산불위험지수는 1에서 100까지 숫자로 나타나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‘전국 시군구 상세산불위험정보’와 ‘대형산불위험예보제’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<http://forestfire.nifos.go.kr> 웹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산림보호법 제31조(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) 산림청장은 산림에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발생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지수(이하“산불위험지수”라 한다)를 계산 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.

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산불경보의 발령)별표 1의 9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림에 있는 가연물질의 연소상태와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수 있는 위험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

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상세산불위험정보